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7. 13 선고 2022가단3309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정진

담당변호사 김용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6. 15.

판 결 선 고 2023. 7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726평 중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24, 25,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“ㄱ” 부분 30㎡, 별지 도면 표시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“ㄴ” 부분 63㎡, 별지 도면 표시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“ㄷ”부분 73㎡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2. 7. 5.경 남양주시 C 답 726평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24, 25,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“ㄱ” 부분 30㎡, 별지 도면 표시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“ㄴ” 부분 63㎡, 별지 도면 표시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“ㄷ”부분 73㎡(이하 이를 합하여 ‘이 사건 점유부분’이라 한다) 지상에 설치된 조립식 패널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설치된 조립식 패널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지상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지상권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혜원

(별지)

도 면



